

01
Special Theme

•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물류산업

글

이윤근 기자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물류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머리말

현재 우리는 이념대립의 종식, 교통과 통신의 발달, 경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의 경쟁과 대외적인 자원의존의 심화에 따른 세계화의 영향을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현실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정부의 강력한 수출 주도정책에 힘을 얻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제조업부문의 기술경쟁력이라고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식, 정보, 금융, 유통물류 등 서비스부문의 첨단화 정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이미 제조업부문을 크게 능가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지식화로 무장한 서비스산업, 특히 물류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업환경도 기존의 단순 창고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IT기술과 결합한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 중이다.

우리 정부도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로 발전시켜 물류산업을 국가 전략적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물류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우리나라를 '21세기 세계의 화물·정보·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시아의 관문으로 만든다'는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보,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물류 유통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정부나 사업자 모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1월 7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 일시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안전조치 없이 많은 인부를 일시에 투입하였고, 지하 출입구 부분에서 강력한 폭발화재가 발생하여 탈출기회를 상실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스티로폼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스티로폼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세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부처별로 관련분야의 안전제도와
기준을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으로 건축물 시설·구조분야에서는 창고 내부 마감재를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급격한 연소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여 물이 침투하지 못해 소화가 곤란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을 임의로 차단시키고 유증기 채류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구 위치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현행 법령기준으로는 아무리 연면적이 큰 물류창고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허술함도 지적되었다.

소방분야에서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결과 보고서로 현장검사를 갈음하고 있어 소방시설 적법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현행 법령상 용접작업 및 화기취급에 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 차단으로 화재 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볼 때, 정부와 사업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물류대국 건설을 말하고 추진해왔지만 그 시설을 건설하고 사용하는 주체인 사람에 대한 안전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에는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물류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정책 방향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방화협회(NFPA)에서 제정한 인명안전코드(Life Safety Code 101)에서 냉장창고, 화물 터미널, 대형창고 등에 대해 수용인원, 비상구, 피난로의 배치, 비상구까지의 보행거리, 피난통로에서의 탈출, 비상조명,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업체, 보험회사 등에 지도·권고함으로써 인명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NFPA 5000 건축물 구조 및 안전코드(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 제30장 창고용도 규정에서도 위험분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자세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부처별로 관련분야의 안전제도와 기준을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2008년 1월 7일 이전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시설·건축분야

우레탄폼 등 물류창고에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는 난연성능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수용인원과 연면적에 따라 피난계단,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안전분야

근로인원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기준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토록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 소방분야

대규모 물류창고 등과 같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 전 소방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작업장에서 용접을 할 때는 소방서에 사전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용접작업이나 화기취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소방시설 작동기능 차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전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여기에 소개하는 정책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의견교환,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하는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

